「평창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평창군의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❍ 군수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(안 제3조~제4조)

❍ 기본계획의 수립・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❍ 청렴 관련 사업 시행 및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❍ 예산지원, 협력체계,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❍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❍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❍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군수의 책무와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, 기본계획 수립, 청렴 관련 사업 및 청렴도 조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❍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·홍보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 따라서 군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

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